

29. 군부대 민간조리원에서 발생한 폐암

성별	여성	나이	만 56세	직종	군부대 민간조리원	직업관련성	높음
----	----	----	-------	----	-----------	-------	----

1 개요

근로자 ○○○는 1997년 3월 군부대 내 병영식당에 입사하여 약 22년 9개월 동안 민간조리원으로 근무하였다. 56세가 되던 2019년 11월 건강 검진에서 종괴가 발견되어 대학병원에서 원발성 폐암(선종, adenocarcinoma, T1bN0Mx)으로 진단되었다. 근로자는 환기 및 환풍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곳에서 조리기구의 가스, 튀김요리 등 조리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부대원의 간접흡연 등의 노출로 인하여 상기 질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요양신청을 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이에 대한 업무관련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역학조사를 의뢰하였다.

2 작업환경

근로자 ○○○는 진술에 의하면 1980년대 약 3년간 방적공장에서 가공한 실을 감는 권취공정의 작업반장 업무를 하였고, 퇴사 후 카펫 제작공장에서 6개월간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후 1997년 3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부대명칭의 변경은 있으나 군부대 내 병영식당에서 민간조리원으로 약 22년 9개월 동안 취사병의 조리 지도업무와 식자재 검수 및 조리(튀김, 볶음, 부침)등 조리실 내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였다. 근로자는 하루 2식을 준비하면서 직접 조리 또는 취사병의 조리지도 등을 통해 약 3시간 정도 튀김, 구이, 볶음, 부침개 등을 조리하며 발생하는 연기와 가스를 노출되었다. 조식을 제외한 중식 및 석식은 매 끼니 마다 튀김 또는 볶음 요리가 대부분 메뉴에 포함되었다. 특히 구이(계란후라이)는 식수인원만큼 근로자가 직접 구웠고, 볶음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험한 튀김의 경우 근로자가 직접 하거나 취사병 조리시 튀김 솥에 대기하고 있어 하루에 약 3시간 정도 조리흡에 노출되었다고 한다. 또한 취사장 출입구를 통해 수시로 담배연기에 노출되었고 점심시간 전·후로 담배연기에 더욱 심하게 노출되었다.

3 해부학적 분류

- 기타 암

4 유해인자

- 화학적 요인

5 의학적 소견

근로자 ○○○는 56세가 되던 2019년 11월 건강검진에서 종괴가 발견되어 상급병원 진료 권유받아 대학병원에서 원발성 폐암을 진단받았다. 2019년 12월 비디오 보조 흉강경으로 우상엽 절제술(VATS RUL lobectomy, 2.5 * 1.8 cm), RLL superior segment wedge resection 수술하였다. 최종적으로 비소 세포 폐암(선종, adenocarcinoma, T1bN0Mx)으로 진단되었다. 이후 항암치료하였고 현재 추적관찰 중이다. 근로자는 흡연은 하지 않았고 음주는 한 달에 2회 소주 반병을 마셨다. 아버지도 담배를 피우지 않았으며 남편도 담배를 피우지 않았고, 아들은 성인이 되고 담배를 피웠지만 집에서 피운 적은 없었다. 폐암의 가족력은 없었고, 어머니가 자궁경부암을 진단받았다. 건강진단에서 2015년 4월에 흉부촬영에서 비결핵성 질환 소견이었지만 추가 검사를 하지는 않았고, 2016년 3월 이상지질혈증 의심, 2017년 11월 이상지질혈증 의심으로 2차 검진 대상이었고, 2019년 11월에 당뇨병 질환 의심 소견 보였다.

6 고찰 및 결론

근로자 ○○○(여, 1963년생)는 만 56세가 되던 2019년 11월 폐암을 진단 받았다. 근로자는 1997년 군부대 내 병영식당에 입사하여 22년 9개월 동안 민간조리원으로 근무하였다. 근로자의 상병과 관련된 직업적 요인으로 고온의 튀김요리에서 발생하는 조리흡이 제한적 근거가 있다. 근로자는 민간조리원으로 근무하면서 조리업무 중 고온의 튀김, 볶음 및 구이 요리에서 발생하는 조리흡에 장기간 노출되었다. 또한 근로자 재직 당시에 환기 시설이 미흡하였고, 2006년에 축류형 송풍기가 추가 설치되었지만 국소배기시설은 전무하였으며 여전히 환기시설이 열악하였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의 과학적 근거가 상당한 것으로 판단한다. 끝.